



농림축산식품부

보도자료

2016년 11월 9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기자재정책팀 최봉순 팀장, 안치홍 사무관(044-201-1892) / 제공일 : 10월 18일 (총 5매)

"2017년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시행지침 개정"

《 주 요 내 용 》

◇ 2017년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시행지침 개정 시행

- 정보시스템을 활용 원료투입부터 제품생산까지의 생산일정 관리
- 농업인의 사업포기물량에 대한 추가 신청 및 공급과정 신설
- 시·도별 사업성과평가를 통한 사업비 차등지원

□ 11.9일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재수)는 2017년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.

- 주요 지침 개정 내용은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비료 품질관리 강화, 사업포기물량에 대한 추가신청 및 공급과정 마련, 시·도별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비 차등지원 등이다.
- 이번 개정안은 제조업체, 지자체 담당공무원, 관련기관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었다.

□ 먼저, 생산단계에서의 비료 품질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, 비료 제조 시 원료 투입 과정, 생산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.

○ 비료품질관리시스템에 비료 제조업체에서 관련된 정보(원료 투입량, 제품생산실적 등)를 입력하면 농진청, 지방자치단체의 비료 검사 공무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.

○ 시스템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을 통하여 규정 위반 여부*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유기질비료 사업대상자에서 일정기간 제외된다.

* 원료투입량과 제품생산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(현장 점검), 최소 생산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(6개월~1년), 자료입력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(경고~6개월)

□ 둘째, 농업인의 사업포기물량에 대한 불용을 최소화하고 다른 농가에서 사용토록하기 위해 추가 신청 및 공급과정을 신설하였다.

○ 지자체와 지역농협에서는 농업인이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라 수령을 포기하는 물량을 파악하고, 파악된 물량은 지자체에서 추가 신청을 받아 다른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로 마련하였다.

○ 농업인이 사업신청 후 일정시점*까지 농협에 비료 수령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익년도 사업물량 배정시 페널티를 부과한다.

* 상반기 공급희망 농가는 5월말까지, 하반기 공급희망 농가는 9월말

- 셋째,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농자재 사업 추진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과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.
 - 토양검정 실적, 친환경비료 사용실적, 지자체 노력 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시·도별로 사업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.
 - 이에 따라 재배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 지원이 가능해지고 사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.
-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7년도 유기질비료 사업시행지침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, 농협 및 비료업체 등에 교육·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농업인이 우수한 비료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
 - 아울러, 농업인이 내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금년 11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에 직접 방문, 마을이장을 통한 전달, 우편, 팩스를 통해서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.

참고 1

2017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안내

□ 사업의 목적

-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·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·지속가능한 농업 추진

□ 지원내용 : 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

□ 사업 대상자 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

*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사항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농관원) 또는 콜센터(1644-8778)로 문의

□ 지원 비료종류

-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·혼합유기질·유기복합비료
- 부숙유기질비료(2종) : 가축분퇴비·퇴비

□ 지원조건

- 사업비(보조) 및 지원규모(안) : 1,600억원, 3,200천톤
- 지원조건 : 보조(국고 800원~1,400원/20kg + 지방비 600원/20kg 이상) + 농협 지원금 등 + 자부담(20%이상)

(단위 : 원/20kg)

구 분	특등급	1등급	2등급
유기질비료		1,400	
부숙유기질비료	1,100	1,000	800

- 지방비 : 600원/20kg 이상 정액의무 부담 단, 시·도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가 추가 배정된 경우 의무부담에서 제외

□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: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(2016년 10월 20일~11월 30일)

□ 사업주관기관 : 시·도(시장·군수·구청장), 농협중앙회(지역농협)

□ 사업담당부서

- 농림축산식품부 : 식량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(044-201-1892~3)
- 시·도 : 농정국 친환경농업과, 농산(유통)과, 농정과(특·광역시 : 농정과)
- 시·군·구 : 친환경농업과, 산업과·농정과(산업계), 농업기술센터
-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, 지역농협

참고 2 2017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

□ 추가 신청 및 공급과정 신설

- 지자체와 지역농협을 통해 농업인의 수령 포기물량 파악하고 파악된 물량은 지자체에서 추가 신청을 받아 다른 농가에 공급
- * 농업인이 일정시점까지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수령하는 경우 페널티 부과

□ 사업성과 평가를 통한 시·도별 사업비 차등지원

- 토양의 유기물함량, 산성도, 토양검정을 통한 시비처방서 발급 비율, 예산집행실적, 토양환경개선을 위한 교육·홍보실적 등

□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 활용한 비료 품질관리 강화

- 비료품질관리시스템에 제조원료 장부, 생산·판매실적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해 주기적 입력 의무화

□ 일정기간(3~5년) 일괄신청제도를 매년 신청으로 변경

- 농업경영체정보 현행화를 위해 매년 신청하되 전년과 동일한 경우 전년 동일로 신청 간소화

□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 추가

- 부속 유기질비료 최소한의 생산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 (발효기간 15일이상, 후숙 60일이상)
-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에 ‘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’, ‘생산일지’, ‘판매대장’ 등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업체
- 아주까리유박(피마자박)을 원료로 제조한 유기질비료의 포장지 전면에 붉은색 주의문구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

□ 공급업체별 생산능력한도 초과 공급 방지

- 업체별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관리하고 초과하여 공급한 업체에 페널티 부여